

○ 공단이 지방세법 제169조에서 규정한 면허부여기관이 되는 것임 (세정13430-839, '99. 7. 9)

- ⑫ 은행지점(보험업 점포)등은 재정경제부장관(금융감독위원회)의 인가사항인 은행업(보험업)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는 부과되어야 함 (세정 13430-576, '98. 12. 31, 세정13430-211, '99. 11. 24)
- ⑬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처리하도록 한 것은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것이며, 이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별로 별개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각 해당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(세정13430-355, 2000. 3. 7)

#### IV. 면허세 납세의무자

-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 (법 제161조)
-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
-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
- 면허의 권리항유 여부에 불구 납부

#### V. 면허세 세율

- 세율 (법 제164조)

구 분	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	기타 시	군
제 1 종	45,000원	30,000원	18,000원
제 2 종	36,000원	22,500원	12,000원
제 3 종	27,000원	15,000원	8,000원
제 4 종	18,000원	10,000원	6,000원
제 5 종	12,000원	5,000원	3,000원